

청렴주의보 발령 [2026년 제2호]

[발령사항]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

□ 발령개요

- (발령기간) 2026. 05. 18.(월) ~ 06. 05.(금)
- (발령대상) 공사 소속 전 임직원

□ 발령사항

- 금품·향응·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·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금지
-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와 무관한 출장, 정당 행사 지원·참석을 위한 장시간 무단이탈,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 위반행위 금지
- 학연 및 지연에 기반한 특혜 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
- 연차, 출장, 퇴근 후 중요문서 방치 등 개인 보안관리 위반 금지
- 근무시간 중 음주, 도박, 보안관리 소홀 등 근무태만 금지

□ 관련규정

- 공사 「취업규정」 제11조의2(부작위 의무)

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0.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

- 공사 「복무지침」 직원의 금지사항(정치행위 등)

2. 정치적 행위의 금지

가. 직원의 정치적 행위금지

- (1) 정당을 조직하거나,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,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
- (2)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
- (3)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

나. 정치적 목적 및 한계

- (1) 시위운동을 기획·조직·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
- (2)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·편집·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

- (3)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·도서·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
- (4)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(旗)·완장·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, 이를 착용·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

□ 화성도시공사 비리행위 등 신고방법

구분	신고방법	비고
헬프라인	연결 · 공사 홈페이지→참여·소통→통합신고센터 →헬프라인 · 헬프라인 QR코드 / 전용 앱(App) ⇒ 접속 “헬프라인” 접속 ⇒ 신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	
통합신고센터 이메일 신고	· 통합신고센터 이메일 신고 - (이메일) clean@hsuco.or.kr	
부패 및 비리신고 핫라인	· 청탁방지담당관 - (사무실) 353-6890, (이메일) compliance@hsuco.or.kr	
청렴신문고	· 공사 본부 출입구 앞 설치	
윤리감사부/ 청렴조사TF	· 사무실 내방 또는 유선신고 - (주소)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, (연락처) 353-6861, 6862	